

공익제보 처리 및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 규정 명칭

- 공익제보 처리 및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 “공익제보”의 범위에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신고자 보호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제보”의 범위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익명신고·신고자 보호 운영 체계 마련
- 「윤리·인권경영규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6년 09월 01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준법경영실
- 답 당 자 : 김우태 팀장(bari7844@hf.go.kr)

임영인 대리(zer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56
- 팩스번호 : 0505-036-1315

붙임. 공익제보 처리 및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안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임)

공익제보 처리 및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u>임직원 행동강령</u>」에 따른 부패행위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신고, 「<u>인권경영규정</u>」에서 정하는 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패행위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u>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u>」에서 정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신고, 「<u>윤리·인권경영규정</u>」에서 정하는 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인권경영규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운영 근거 신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라. (생략) <u><신 설></u> 4 ~ 12. (생략) 13. “공익제보”란 제2호의 “부패행위”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7호의 “공익신고”를 의미한다. 14 ~ 19.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라. (현행과 같음) <u>마.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u> 4 ~ 12. (현행과 같음) 13. “공익제보”란 제2호의 “부패행위”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u>제20호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u> 및 제7호의 “공익신고”를 의미한다. 14 ~ 19. (현행과 같음) <u>20. “이해충돌 방지제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u>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운영 근거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하 “ <u>이해충돌방지법</u>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을 말한다.</u>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생략)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윤리담당책임자 또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u>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u> , 공익침해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윤리담당책임자 또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운영 근거 신설
제5조(윤리담당책임자) ①~⑤ (생략) <u><신설></u>	제5조(윤리담당책임자) ①~⑤ (현행과 같음) <u>⑥ 윤리담당책임자는 공익제보의 비식별 통계, 신고유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신고자와 관계자의 비밀보장 및 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리·인권경영규정」에 따른 윤리위협·취약분야 검토, 추진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u>	개별 신고사건의 원자료가 아닌 비식별 통계와 제도개선 사항만 환류하도록 안전장치 명문화
제8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① (생략) <u><신설></u>	제8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0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u>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운영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제보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 <u>내지 제2항</u> 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제보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29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계약변경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으로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u>강령 제49조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공사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2]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계약변경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으로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 <u>윤리·인권경영규정</u> 」 제16조에 따른 <u>윤리경영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공사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2]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윤리·인권경영규정」 제정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근거 이관
제2장 부패행위 <u>및 강령 위반행위</u> 신고	제2장 부패행위, <u>강령 위반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u> 신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신고 운영 근거 신설
제56조(외부 익명신고) ① 임직원은 외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직무갑질행위 및 「 <u>인권경영규정</u> 」 제31조에 따른 <u>인권침해행위</u> (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에 대한 신고 및 준법질의(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6조(외부 익명신고) ① 임직원은 외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u>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u> , 직무갑질행위 및 「 <u>윤리·인권경영규정</u> 」 제53조에 따른 <u>인권침해행위</u> (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에 대한 신고 및 준법질의(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윤리·인권경영규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익명 신고 운영 근거 신설
제58조(신고내용의 검토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제58조(신고내용의 검토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비고
①~④ (생략) ⑤ 신고내용 검토결과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직무갑질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5조제1항의 신고 종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익명신고 처리 담당 부서장은 업무분장상 신고내용과 연관된 타 부서에 해당내용을 이관하거나 조사를 즉시 종결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내용이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명백한 비방, 헐담 또는 욕설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종결(엄중경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내용 검토결과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 강령 위반행위, <u>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행위</u>, 직무갑질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5조제1항의 신고 종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익명신고 처리 담당 부서장은 업무분장상 신고내용과 연관된 타 부서에 해당내용을 이관하거나 조사를 즉시 종결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내용이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명백한 비방, 헐담 또는 욕설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종결(엄중경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익명 신고 운영 근거 신설
<u><신설></u>	<u>부칙 (4)</u> <u>이 기준은 2026년 9월 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신설